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2. 15 선고 2021가단366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, D

변 론 종 결 2022. 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9지분에 관하여 2021. 5. 1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21. 6. 8. 접수 제6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갑 제1 내지 7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(각 가지번호 포함)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

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2548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. 4. 18. 'D은 원고에게 12,184,727원 및 그 중 8,284,7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이는 2017. 5. 12. D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,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, 2021. 5. 19. E가 사망하면서 아내인 피고와 자녀인 D, C, F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가 이뤄졌고, 그에 따라 2021. 6. 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의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마쳐진 사실, 당시 D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,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/9지분(이하 '이 사건 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하였는바, 이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2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위 지급명령 정본이 D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7. 5. 12. D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,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바, 그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. 3.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완수

부동산의 표시

1. 토지의 표시

강원도 동해시 대 121 m²

2. 건물의 표시

강원도 동해시

[도로명주소] 강원도 동해시

위 지상

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

66.59 m²

